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2년 10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1992년 10월 30일

3. 개 정 이 유
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22조(법률 제4473호 : '91.12.31)의 개정예

따라 "의사담당관"을 "의사국장"으로 변경하고자 함.

4. 주 요 글 자

용어의 정의중 본청의 "의사담당관"을 "의사국장"으로 변경.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(의사국의 설치 등)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"의사담당관"을 "의사국장"으로 개정하고,
- 부칙의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중에서 "의사담당관"을 "의사국장"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직위조정에 따른 기타 관련 조례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(※ 「법제처」법령입안 심사기준 P22참조)

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첨